

공 고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9 - 731호

승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·공고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-204호(2004. 6.25)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으로 승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48호(2010. 4.22)에 따라 승인2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329호(2013.10.10)에 따라 승인2재정비촉진구역 지정 해제 및 승인2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 된 승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 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서류를 공람·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5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공람공고 다음날부터 30일간

나. 공람부서 :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02-2148-2682)

다. 공람내용 : 승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·공고

라. 구역현황

1) 사업명칭 : 승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

2) 위 치 : 서울시 종로구 승인동 61번지 일대

3) 구역면적 : 21,000㎡

마.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: 2004. 6.25(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204호)

바. 관련법령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(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) 제1항
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(정비구역
등의 직권해제 등) 제3항 제2호

사. 승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중 본
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위 공람부
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 략 의 건 서

구 역 명	송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(종로구 송인동 61번지 일대)			
공람기간	공람공고 다음날부터 30일간			
대 상 물 건 지	건 물			
	토 지			
의 건 제 출 인	성 명		주민등록 번 호	— * * * * *
	주 소		전화번호	

내 용